

미국의 독점금지 제도

본협회 조사부

미국, 일본, 독일 등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독점금지법을 운용하고 있다. 선진 각국의 독점금지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호부터 세계 주요 국가의 공정거래 제도를 연재한다. 이번호에는 먼저 미국의 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 독점금지 제도의 역사적 배경

미국에 독점금지 제도가 도입·시행된 것은 1880년대로 그 당시 미국은 거대자본의 시장독점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와 중소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제한되고 강제로 퇴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당시 공화당 오하이오 상원의원인 John Sherman이 셔먼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 독점금지법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1890년의 셔먼법 제정 이후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1914년 클레이튼법 및 연방거래위원회 법, 1936년 Robinson-Patman법, 그리고 1973년 Hart-Scott-Rodino법의 제정으로 수정·보완되면서 발전하여 왔고, 이런 배경에는 당시 미국의 경제적 배경뿐만 아니라 하버드학파와 시카고학파간의 논쟁, 집권 정부의 정치적 이념 및 세계 시장에서의 미국의 경쟁성 여부등이 작용하였다.

미국 독점금지정책의 변천 흐름을 보면 1940년대에 독점

금지 제도의 기본틀이 거의 확립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50~1960년대에 가장 엄격하게 운용되다가 미국 경제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1970~1980년대에 그 운용도 약화되었다. 그러나 1992년 진보적 이념을 가진 민주당의 집권과 더불어 최근에는 다시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 독점금지법의 실체적 규정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셔먼법(Sherman Act), 클레이튼법(Clayton Act),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1936년에 당시의 클레이튼법 제2조(가격 차별)를 개정한 Robinson-Patman 법, 1976년에 클레이튼법 제7조(주식 및 자산의 취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정된 Hart-Scott-Rodino법(클레이튼법 제7조A)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법률의 규정중 실체적 규정은 셔먼법 제1조(거래 제한) 및 제2조(독점화), 클레이-

튼법 제2조(가격 차별), 제3조(끼워팔기 및 배타조건부 거래), 제7조(주식 및 자산 취득) 및 제8조(임원 겸임), 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불공정한 거래방법)이다.

이 중 셔먼법 제1조 및 제2조가 미국 독점금지법의 핵심으로서 독점금지법상의 일반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클레이튼법은 특정한 행위 유형에 대하여 그 효과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독점을 형성할 우려가 있는 때'에 그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셔먼법 제1조 및 제2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는 셔먼법과 클레이튼법을 포함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불공정한 거래방법 또는 기만적인 행위 및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독점금지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셔먼법

① 제1조 (거래 제한 : Re -

straints of Trade)

“주간(州間) 혹은 외국과의 통상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계약, 트러스트 및 기타의 형태에 의한 결합이나 공모는 위법으로 한다.” 이 규정은 카르텔 일반에 관한 규정으로 사업자간의 수직적 제한 및 수평적 제한 모두를 규제 대상으로 하며,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인은 물론 개인까지도 처벌 할 수 있다.

② 제 2 조 (독점화: Monopolization)

“주간(州間) 혹은 외국과의 거래나 통상의 어떤 부분이라도 독점하거나, 독점을 기도하며, 또는 독점할 목적을 갖고 다른 자와 결합하거나 공모하는 자는 중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독점화를 위한 공모는 제1조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제2조는 독점화 및 독점화의 기도를 내용으로 하는 단독 행위를 주로 금지하는 것이며, 사업자의 단독 행위를 규제하는 기본 규정이다. 이 규정은 특히 기업결합 심사시 시장 점유율에 따른 독점력 평가에 관련된 규정으로 활용되고 있다.

(2) 클레이튼법

① 제2조(가격차별, 일명 Robinson-Patman법)

가. 제2조 a항 : 제조업자가 다른 구매자에 대하여 동등·

동질의 상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가격 차별)이 실질적으로 제조업자간에 경쟁을 제한하거나 독점을 형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가격 차별을 하는 자와 이를 알면서 받는 자간에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는 위법이다. 다만 비용 차이를 반영한 가격 차별은 위법이 아니다.

나. 제2조 b항 : 판매자가 경쟁업자의 낮은 가격에 선의로 대항하여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경쟁적 대항 가격), 또는 경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시설에 선의로 대항하여 용역·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

다. 제2조 c항 : 실제로 중개업무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한 수수료, 중개료 및 기타 보수의 지불 또는 그 수취를 금지한다.

라. 제2조 d항 및 e항 : 판매자가 상품의 판매 비용의 지불 또는 판매 촉진을 위한 용역·시설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비례하여 평등한 조건으로 주어야 한다.

마. 제2조 f항 : 구매자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여 구매자가 제2조 a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 차별이라는 것을 알면서 유인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② 제3조 (끼워팔기 및 배타조건부 거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자기의 경쟁자의 물품의 사용이나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협약 또는 양해를 하는 것이 거래에 있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독점을 형성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특허권의 취득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금지한다.” 한편, 제3조가 적용되는 끼워팔기 및 배타조건부 거래에 대하여는 카르텔을 규제하는 셔먼법 제1조도 경합적으로 적용된다.

③ 제7조(주식 또는 자산의 취득)

“다른 사업자의 주식 또는 자산 기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독점을 형성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합병규제(기업결합 규제)로 불리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규제 대상은 수평 결합, 수직 결합 및 혼합 결합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연간 순매출액 또는 자산 규모를 갖는 회사가 결합을 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독점금지법 운영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며(사전 신고제),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결합이 금지된다.

④ 제8조(임원 겸임)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다른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

겸임을 금지한다.”

(3) 연방거래위원회법

① 제5조 a항(불공정한 경쟁 방법·기만적 행위)

거래에 있어서 또는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경쟁 방법 및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은 위법으로 하고 있으나 판례 해석상 불공정 경쟁방법에는 수평적·수직적 거래 제한 행위, 독점 및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과 같은 셔먼법, 클레이튼법 위반 행위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기타 독점금지법 이 외의 불공정한 경쟁 방법도 포함된다.

② 제12조 a항(허위 광고)

식품, 약품, 장치, 화장품의 판매와 관련한 허위 광고의 유포를 금지함으로써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에는 소비자보호권한이 발생된다.

독점금지 제도의 집행 기구 및 사건 처리 절차

(1) 독점법 집행 기구

미국의 공정거래기구는 법무성 독점금지국(Antitrust Division)과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 FTC)로 조직이 이원화 되어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업무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방거래위원회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준사법적·준입법적 기능을 가진 독립행정 기관으로서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반면, 법무성 독점금지국은 셔먼법 제정 이후 이 법의 집행을 위하여 행정부의 한 부서로서 설립되어 대통령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

두 기관은 연방정부의 독점금지 업무를 공동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관할권의 중복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Clearance Procedure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무성 내에 FTC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놓고 있다.

두 기관의 근본적인 차이는 법무성 독점금지국은 민·형사 사건을 모두 취급하는 반면, FTC는 민사사건만 취급하고 소비자보호 업무는 FTC에서만 수행하고 있다. 두 기관의 조직 구성 및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방거래위원회(FTC)

1914년 연방거래위원회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FTC법 및 클레이튼법을 운용하고 있다. FTC법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업무도 다루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명의 위원과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

고 위원장은 5명의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FTC의 주요 조직으로는 경쟁국, 소비자보호국, 경제국, 법률자문관실, 행정심판관실 등이 있다.

가. 경쟁국 (Bureau of Competition):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 및 소추를 담당하는 운영국으로 FTC법 제5조(불공정거래방법), 클레이튼법 제7조(주식 및 자산취득 제한) 및 7조 a(사전 기업결합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예방적 금지명령을 연방지방법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사건에 대한 심판을 행정심판관에 부의하고 행정심판관의 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나. 소비자보호국(Bureau of Consumer Protection): 소비자보호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소추를 담당하는 운영국으로, FTC법 제5조의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주로 담당하며 아울러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정책 및 집행도 담당하고 있다.

다. 경제국(Bureau of Economy): 경제적인 문제에 관하여 위원과 경쟁국 및 소비자국에게 조언을 하는 협조국으로 위반 사건이나 정책 업무에 대하여 경제적인 분석을 하는 업

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모든 경쟁국의 사건에는 경제국의 견해가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라. 법률자문관실(General Council Office) : 위원회의 주요 법률자문기구로서 연방 법원에서 위원회를 대표한다. 긴급 중지명령 및 항소사건을 담당한다.

② 법무성 독점금지국

1903년 법무성에 독점금지 및 소송담당 차관보가 설치된 후 1933년에 현재의 독점금지국이 정식으로 설치되었다. 독점금지국은 셔먼법 및 클레이튼법의 집행 권한과 아울러 경쟁정책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독점금지국의 조직은 정책업무 담당과 규제업무 담당, 소추업무 담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업무 분장이 업종별로 되어 있어 산업별 시장 분석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가. 정책 및 입법 업무 담당

- 법률정책과: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의 평가 분석, 입법 계획 등 장기 전략 수립, 대국회 업무 처리 담당
- 항소과: 연방고법 및 대법원 예의 항소 담당
- 외국통상과: 통상 관련회의 및 외국 경쟁당국, 국제기관과의 경쟁정책 협상 담당
- 경쟁정책과: 경쟁정책 운영에 대한 국제 협력, 주로 기술적인 지원 제공 담당

나. 규제업무 담당

- 통신·금융과: 통신업, 금융·투자·증권 분야의 법집행 및 경쟁촉진 담당
- 자유업지적 재산권과: 변호사등 자유업, 특허등 공업소유권 관련 분야의 법집행 및 경쟁촉진 담당
- 운송·에너지·농업과: 자동차, 철도 등 항공운송업,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력 등 에너지 및 농업 분야의 법집행과 경쟁 촉진 담당
- 소추업무 담당
- 소송1과: 건축자재, 건설업, 식품·담배·소매업, 종이제품 및 음료 분야의 위반 사건 조사 처리 담당
- 소송2과: 광업, 섬유, 화학, 항공기 및 자동차 분야의 위반 사건 조사 처리 담당
- 라. 경제 분석 담당
- 경제규제과: 규제 분야 사건의 경제 분석 담당
- 경제소송과: 일반 심사 분야 사건의 경제 분석 담당

(2) 사건 처리 절차

① 행정 절차

연방거래위원회는 어떤 특정 사건이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동의 명령(consent order), 또는 심판 개시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우선 상대방에 심판개시 결정안 및 배제조치 명령안을 통보하고, 이 명령안의 내용에 대

해 합의할 때에는 동의명령을 내리고, 동의가 불성립할 때에는 심판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이 심판 절차는 심사관이 원고측, 피심인이 피고측이 되는 대심구조로써 행정법원판사가 심판관이 되어 가결정을 내리고 이 가결정에 대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최종 심결이 된다. 피심인은 연방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연방항소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사법 절차

미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사법 절차가 중심이다.

가. 형사 절차 : 셔먼법 제1조와 제2조 위반은 형사상의 중죄로, 법무부가 연방대陪심을 소집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나. 민사 절차 : 셔먼법 제4조 및 클레이튼법 제15조에 의거, 셔먼법 및 클레이튼법 위반을 배제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명령(위반 내용을 금지시키고 장래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명하는 명령)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외에 독점금지관련법 위반으로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인(私人)은 그 위반의 배제를 요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9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일지

날짜	업무내용
----	------

95. 2. 27.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서적재판매가격계약의 체결을 위임하지 않은 출판사에 대해서도 도서정 가제 실시의 명목으로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함으로써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하여 시정조치
95. 3. 8. 아파트 분양시 택지 등급의 미확정으로 분양가에 그 택지에 대한 세금을 계상할 수 없었을 경우는 입주시 정산토록 시정조치
95. 3. 9. •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세계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판촉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상공회의소 등 업계의 경제행정규제완화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행 경품고시에 규정된 경품류제공 한도를 현실 수준에 맞게 재조정하고 실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경품제공 행위를 완화하였음.
 • 경품류 제공 한도의 상향 조정, 소비자 경품의 제공 기간에 대한 제한 폐지 및 공개 현상 경품의 제공 회수에 대한 폐지, 사업자경품의 규제완화, 실거래없이 내점객에게 제공되는 금품은 경품에서 제외하는 등이 주요 골자임.
95. 3. 15. • 95. 1. 5. 의 개정·공포된 하도급법 제2조 6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토록 되어 있는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를 명확히하여 그동안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분쟁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객관화되지 못한 법적용 대상을 명확히함
 • 종전의 고시가 국제계약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을 개정,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가능한한 자세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이 어디에 해당되는 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음.
95. 3. 21. 한국산업가스, 대성산소, 유니온가스, 대한BOC가스가 수차례 모임을 갖고 가격의 공동 인상, 일부 충전소에 대한 수급 통제, 기존거래처 상호 인정 및 신규충전소 억제, 가격 인상 위반 충전소에 대한 제재 부당한 공공행위로 시정조치
95. 3. 28. 현행 지부, 지회 및 분회 등 산하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분회와 산하단체가 각각 개별 신고토록 되어 있어 신고 내용이 중복될 뿐 아니라 신고서류도 과다하므로 산하조직인 지부·지회 및 분회등은 본회에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시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도록 개정

날짜	업무내용
----	------

95. 4. 1. 94년도와 비교시 신규로 추가되거나 제외된 기업집단은 없으며,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94년보다 7개사가 증가한 623개사가 되었음.
95. 4. 4. •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 각종 신고가 증가하여 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공급규정 및 일반 전화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법제3조 위반 여부를 심사한 결과 연체료 관련조항, 명의변경시 신고객의 구고객채무승 계조항, 연체요금 납부기한 경과시 사전최고 없이 수급계약폐지조항을 시정토록 시정권고
• (주)보성 등 40개 건설회사가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시한 침산3지구아파트 건립 공사의 입찰에서 입찰내역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거나 내역서를 확인시켜주는 등으로 (주) 보성이낙찰을 받도록 담합하여 시정조치
• 금강제화, 에스콰이어, 엘칸토 등 제화 3사는 하청업체 등 협력업체에 대한 상품권 구입 강제행위, 상품권의 사원판매 행위 등의 위법 행위를 하여 시정조치
95. 4. 18. 광주, 대전광역시, 전주시, 안양시 등 4개 지자체가 공영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택분양 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공급 면적 차이 발생시 정산 면제 조항등 7개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토록 시정조치
95. 4. 25. • 한국가스공사의 자기의 책임으로 인해 2개 공급기지의 부지매입이 지연되어 공기가 연장되고 그로 인해 대림 산업에 추가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을 지급치 않음으로써 시정조치
• 현대, 대우그룹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이행 상태 점검을 조사하는 과정에 현대전자산업(주), 현대엘리베이터(주), 대우자동차(주)의 사원 판매, 차별 거래, 부당한 거래거절등 법위반 행위가 있어 시정조치
• 대규모기업집단 한일 소속회사인 (주)한일합섬은 순자산 감소에 따른 출자한도의 축소로 95. 2월말 현재 231억원 상당의 출자한도 초과상태가 됨으로써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천만원을 부과
95. 5. 2. 예식장을 임대하면서 드레스, 사진, 비디오, 식단, 서비스 등을 끼워팔기등으로 14개 예식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고발, 시정명령, 과징금부과등 시정조치
95년도에 신규지정된 시장지배적사업자 30개 사업자의 대리점계약서등 각종 계약서를 조사
95. 5. 4. 한결과 우월적지위남용 행위, 구속조건부 거래와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등의 법위반 내용이 포함되고 있어 19개 사업자의 계약서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권고
송탄시 약사회가 대형약국의 저가판매에 따른 피해를 우려 회원들에게 활동지침을 배부하고
95. 5. 18. 일부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대형약국에 약을 공급하지 말도록 압력을 가하고 대형약국에 대해서는 약국 면적과 약사 수를 감축하라는 요구를 하였으며,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는 판매가 격을 결정하고 이를 회원에게 준수토록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시정조치

날짜	업무내용
----	------

95. 5. 22~23. 표세진 공정거래위원장은 제7차 베를린 국제경쟁정책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참가 대표들과 경쟁 정책 및 산업정책의 운용에 관한 의견 교환 및 국가간의 협력 방안을 협의
95. 6. 15. 10개 중앙 일간신문사가 구독자 확보를 위한 과다경품 제공, 무가지 배포 등 공정한 경쟁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가 있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조치
95. 6. 22~23. 한일간 공정거래당국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경쟁정책의 최근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경쟁촉진, 경제력 집중억제, 불공정거래 행위의 시정등 양국 공동관심사에 대한 토의를 가짐으로써 양국 경쟁제도의 발전을 도모
95. 7. 1. • 공정거래위원회가 92. 10. 22 대륙토건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데 대하여 대륙토건이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고등법원에 환송함으로써 위원회가 승소하였는데 이번의 대법원 판결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정산 할 사정이 있더라도 일단 하도급대금은 그대로 지급하고 그밖의 채권 채무 관계는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하도급 대금지급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마련됨.
- 공정거래위원회 94. 4.~95. 3. 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타회사 출자비율은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소유 분산, 업종 전문화등을 위한 노력은 미진했던 것으로 분석됨.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출자총액 한도 인하(순자산의 25%)하여 향후 3년간 해소해야 할 출자초과금액은 27개 기업집단 소속 114개사에 22,029억원(장부가 기준)임을 발표
95. 7. 3. 업계의 입찰활동시 공정한 경쟁질서가 이루어짐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 관련업계의 경쟁기반을 강화하도록 각종 입찰시 담합행위등 불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 제정
95. 6. 29. • 하도급거래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추세에 맞춰 법 및 시행령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적용 기준 등을 제시하여 하도급법 운용의 대외적인 가이드라인적 성격을 대폭 강화하고 심결례증 정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폭 반영하여 보완하였음. 특히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선금금 및 물가 변동분을 수급사업자가 지급 받는 경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거토록 함.
- 124개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자등 자체시 기한 이익 상실조항 및 통지의 효력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약관법 위반으로 시정조치함.
95. 7. 27.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여 공공 부문의 공정경쟁 질서를 정착시키고 아울러 민간 부문의 자율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및 내자구매가 많은 사업자, 용역발주가 많은 사업자, 과거 범위반 행위가 있었던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투자기관 9개, 정부출

- 자회사 1개,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 1개, 기타 공법인 9개 등 20개 공공사업자를 조사 후 우월적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사실이 적발되어 고발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
95. 7. 28. 95. 4. 1. 현재 공정거래법상 제한대상이 되는 30대 기업집단 계열사간의 채무보증금액은 48.3조원으로 '전년도 72.5조원에 비해 24.2조원이 감소하였으며, 자기자본대비 제한대상 채무보증비율도 95.2%로 전년대비 74.1% 감소하였음. 93. 4. ~ 95. 3. 까지 채무보증 해소 실적은 57.1조원으로 제도 도입 당시 설정한 특례한도액에 의한 한도초과금액 67조원의 85.2%를 해소함으로써 향후 남은 1년간 대부분 법정까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95. 9. 16.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공공사업자 조사결과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 내용을 다른 공공사업자에게도 통보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공공 부문의 공정경쟁 질서를 조속히 정착시키고자 함.
95. 9. 27. • 부실공사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시정하고자 건교부와 협동으로 지하철, 교량, 터널, 가스배관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설 공사를 시공한 24개 업체를 조사한 후 원사업자중 23개 업체와 관련 수급사업자에게서 499건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246건의 건설업법 위반 혐의사항을 적발, 하도급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법위반업체가 조사 기간중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경고조치하고 건설업법 위반혐의 사항은 건교부에 통보
• 69개 사업자단체의 정관 또는 윤리규약등 내부규정 가운데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부담 초래 또는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개선키로 하고 해당 단체의 소관부처에 대하여 이를 시정토록 요청
95. 11. 16.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987년부터 사용하여 왔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에 대하여 건교부와의 협의와 각계 각종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개정안을 확정, 사용 권장하기로 함
95. 12. 6. 국민경제에 영향이 크고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55개 사업자의 대리점계약서, 거래약정서, 납품계약서등 168개의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77개 계약서(40개 사업자)에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40개 사업자 모두가 스스로 동 조항의 시정 의사를 표명하여 시정권고
95. 12. 8. 아파트 분양 및 임대차에 있어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인한 입주계약자들의 피해 및 분쟁발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 및 도급한도액 순위별 총 50개 업체에 대해 불공정약관조항의 시정을 각각 명령하고,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로 하여금 표준약관을 마련토록 요청한데 대하여 동 협회가 회원사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작성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와 「임대주택표준임대차계약서」를 약관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표준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 이를 승인